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2020. 5.



I. 재허가 개요	1
1. 개요 및 대상 사업자	1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2
3. 재허가 여부 등 결정	2
4. 추진일정	3
5. 유의사항	3
II. 재허가 심사	4
1. 심사 기본 방향	4
2. 심사절차	5
3. 심사위원회 구성	6
4. 심사항목 및 배점	6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9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9
2. 작성 및 제출요령	11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13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5
【부록】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244

I. 재허가 개요

1 개요 및 대상 사업자

- (개요) 「방송법」 제9조 「전파법」 제3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중 허가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방송국에 대해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34조에 의한 재허가 심사 실시
- (대상 사업자)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2개사 163개 방송국

구 분	방송사업자
UHD /DTV /라디오 /DMB 겸영 (18개사)	· 수도권(4개사)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지역MBC(8개사) : 대전문화방송(주), (주)엠비씨경남, 부산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주)엠비씨강원영동 · 지역민방(6개사) : (주)대전방송, (주)케이엔엔, (주)티비씨, (주)지원, (주)울산방송, (주)광주방송
라디오 (1개사)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DMB (3개사)	·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주)와이티앤디엠비

※ 세부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 부록(244쪽) 참조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20.6.30.(화))
-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등
-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22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체국 택배 또는 방문접수(일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1, nexly@korea.kr)

3 재허가 여부 등 결정

- (재허가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음
 - ※ 단,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허가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시 3년을 부여
 - ※ 예외적으로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달라 방송국 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 부여
- (중점 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TV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음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4 추진 일정

- 2020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 2020년 7월~11월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 2020년 11월~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0년 12월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재허가 심사기간 중 법인 합병 등 변경허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허가 심사는 변경허가 심사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임
- ※ 다만, 심사기간 중 법인 합병 등 변경허가가 완료되는 경우 서류 보완 후 변경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재허가 여부 의결 예정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일부 자료는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본 안내서에 기재된 심사 일정, 심사 계획 등 심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심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3 -

II. 재허가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및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그 피해 증가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방송사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 사전검증 실시
- 지상파·DTV·라디오·DMB·UHD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일괄 실시
- ※ 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는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

- 4 -

2 심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청취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은 시청자 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방송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실시
-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자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 법인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대표자 모두 참석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 5 -

3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4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텔레비전(UHD/DTV)	라디오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4.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100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a(미정)	a(미정)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계	1,000+a	1,000+a

- ①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② 1,000+a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 6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정도***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⑰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a(미정)
계		1,000+a****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기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⑯으로 병합
**** 총점 1,000+a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지상파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⑰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a(미정)
계		1,000+a***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기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총점 1,000+a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Ⅲ.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 요령

1. 신청서류 및 제출 부수

□ 신청서류

- 신청공문, 재허가신청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등, 첨부서류, 별도 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허가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①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일반현황 ④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⑤ 주간기본편성표 ⑥ 방송국 허가증 사본(스캔하여 그림파일(JPEG 등)로 변환, 수록)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4.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기타 재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 첨부로 제출하여야하는 자료(첨부서류 양식 목록(235p) 참조) 5. 별도제출자료 ①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②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결격사유 확인서 ③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대표자 등 변경시 재제출) ④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⑤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⑥ 공사설계서 첨부서류 중 방송국별 방사패턴값 엑셀파일 6. 요약문 ①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대외 공개용(최초 접수시 제출) ※ 239쪽 참조 ② 내부 재허가 심사용(최종 보정본 접수시 제출) ※ 추후 양식안내

□ 제출부수

- 최초 접수(‘20.6.30.) : 원본 1부, 사본 2부, 요약문(시청자 의견청취용), CD 또는 USB 1개
- 보정 후 접수 : 원본 보정 1부, 사본 15부, CD 또는 USB 2개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제출 부수 현황>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or USB	비고
최초 접수시 (6.30.)	1. 신청공문	1	-	1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1	2	1	
	3. 무선설비 개요서, 공사설계서 등	1	2	1	
	4. 첨부서류	1	2	1	
	5.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1	파일 제출 (재무자료 등)
	6. 요약문	1	2	1	
심사 전 최종 접수시	1. 보정제출 공문	1	-	2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1	15	2	
	3. 무선설비 개요서, 공사설계서 등	1	15	2	
	4. 첨부서류	1	15	2	
	5.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2	필요시 재제출
	6. 요약문	1	15	2	

2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양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의 제목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단, 심사항목이 특정 사업자 또는 매체에만 적용되는 경우(예) 지역·중소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정도) 해당 항목 삭제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겹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5),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사업계획서 본문은 300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수 매체 및 방송국의 재허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한해 각 방송국별 30쪽 범위에서 추가 작성 가능
 - 예) DTV 2개 방송국, FM 2개 방송국 총 4개 방송국 재허가시 390쪽 범위 내 작성가능 - 기본 300쪽 + (N-1)30쪽

- 11 -

-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은 ① 방송사업자 일반 현황 ②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③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 실적 ④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10쪽 이내로 작성하되,
 - 방송평가를 제외한 중분류 평가 항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중분류 평가 항목 : 안내서 7~8쪽 참조)
- 심사용 요약문은 별도로 50쪽 내외(연주소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계획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작성 시 원칙적으로 방송국별, 매체(채널)별로 구분·작성하되, 방송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통합 작성
 - 2017년 (재)허가 신청서 작성시 방송국별로 작성된 경우 계획대비 이행실적도 방송국별로 작성해야 함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발생일(과거자료) 순으로 3페이지 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별첨 자료 작성시 본문에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하였음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에도 본문 00p 00항목 관련 자료임을 명시
 - ※ 별첨 자료에는 본문에 작성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 자료 작성
- 신청서 접수 이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를 포함한 재허가신청서 최종본 제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페이지와 내용을 표기하여 제출

- 12 -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현황(‘20.5월 기준)

구분	담당자
재허가 총괄 및 KBS	○ 권혁준 사무관(2110-1421)
MBC 및 지역MBC	○ 이선아 사무관(2110-1423) ○ 최문정 주무관(2110-1425)
지역민방 및 OBS	○ 한지혜 사무관(2110-1459) ○ 이지현 주무관(2110-1426)
EBS 및 tbs	○ 황소현 사무관(2110-1422) ○ 김지은 사무관(2110-1424)

- 재허가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시 각 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

- 13 -

- 14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원 본

2020. 6.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년월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즉 최초제출은 “2020.6.”이 되겠지만 보완본이나 최종본은 “2020.9” 혹은 “2020.12.”가 될 수도 있음

로고 (주)○○방송

- 15 -

- 16 -

원본임이 틀림없음

※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변경 기재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을 복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감 날인해야 함

- 17 -

- 18 -

목 차

I. 재허가 신청서	0
II. 서약서	0
III. 일반 현황	0
I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0
V. 주간기본편성표	0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 19 -

- 20 -

I. 재허가 신청서

※ 이 페이지부터 “-1-”로 쪽번호 표시, 색지로 단면 인쇄

- 21 -

- 22 -

II. 서약서

- 27 -

- 28 -

서약서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 및 전파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6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 날짜는 최초신청일로 기재

- 29 -

- 30 -

Ⅲ. 일반현황

- 31 -

- 32 -

1 개요

□ 휴먼명조 13포인트 진하게

- 방송사(방송국)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 휴먼명조 13포인트
- 휴먼명조 13포인트
- ※ 중고딕 12포인트

※ 내용 작성은 위 글씨체, 크기와 글머리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중간제 목 가,나,다 혹은 번호 등을 설정하여 사용 가능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33 -

3 연혁

□ 00사 주요연혁

- 0000. 0. 00사 설립
-
-
- ※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하되, 최대 3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주요내역 위주로 요약하여 기재

- 34 -

4 법인 현황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주주00	000		00억원	
	특수관계자(개인)	-		-	
	특수관계자(법인)	000		000억원	

※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하되, 주주현황은 5대 주주까지 기재
※ 법인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대표자 아래 “단독/각자/공동” 여부 기재
※ 방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참여지분 순으로 기재
※ 임원란에는 회사 내부의 집행임원(경명진, 임원급)을 기재, 이사회는 6번 항목에 기재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현황

1. 대표자 변경 현황('18.1.1.~'20.5.31.)

성명 (직책)	임명일 (변경신고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사임, 해임, 임기만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재신임
	'00. 00. 00.	'00. 00. 00. ~ '00. 00. 00.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18.1.1.~'20.5.31.)

성명 (직책)	임명일 (변경신고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성명 (00 지역국 편성책임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사임, 퇴직, 해임, 임기만료
성명 (텔레비전 편성책임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성명 (라디오 편성책임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재신임
	'00. 00. 00.	'00. 00. 00. ~ '00. 00. 00.		

※ 매체별/방송국별 편성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모두 기재
※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변경신고일)에 위원회 신고일자 기재 / 비고란에 변동 사유를 기재
※ 임기만료 후 재신임을 받은 경우, 임명일과 임기 별도 기재(변경신고일은 미기재)

3. 제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성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별도 제출자료 참조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제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생년월일 등을 기재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별도 제출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경력사유 확인서 : 별도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방송국명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00. 00. 00. ~ '00. 00. 00. 00:00, 00:00	0회/일

※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실적을 편성책임자 변동 순으로 기재

6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임기	비고

※ 구분에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비고에는 사외이사, 주주여부(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표시), 연임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 주요약력은 최소 2항목 이상 기재 필요(전/현 구분 필요)

1. 주주현황('20.5.31. 기준)

※ 상장사의 경우, 주주명부폐쇄시점 기준으로 기재하고, 상기 기준일자를 반드시 해당 시점으로 변경하여 기재할 것

[illegible]

※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상장사인 경우, 1% 이상 주주만 작성)

※ 빈칸 기재 없도록 해당사항 없는 경우 “-”로 명확히 표기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법인은 법인명, 개인은 성명을 기재
- ②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 제8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대 구성주주 중 지분을 5% 이상 주주에게서는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必)' 및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받아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을 확인해 기재한 후, 등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주주현황'의 증명서류로 별도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해당 주주사에 불임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7. 기타 제출사항 내 특수관계자 확인서(193쪽 또는 195쪽) 참조)
- ※ 다만, 5대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함.
방송법 제8조(소유제 한도) 제2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 ※ 기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 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o"를 표기
- ④ 외국인 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외국인 지분비율(%)을 기재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란에 "o"를 표기

2. 주주 변동내역('18.1.1.~'20.5.31.)

(단위 : 백만원)

[illegible]

※ 특수관계자 포함 5%이상 보유 주주의 변동 내역을 양식에 맞게 작성.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I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I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은 그 내용이 특정 방송국에만 해당하거나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확히 표기하여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이행실적('18~'20)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이행실적 현황('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 '17년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의 신규허가를 받은 방송국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규 허가시 제출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이후 공통 적용되는 사항)

2.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실적

※ '17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에 따른 실적 외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관련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제고실적 작성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4조(업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작성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정의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참조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은 제도적 장치 위주로 평가

- 프로그램 품질 제고(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노력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선거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등

3. 자체심의제도 운영 현황

□ 자체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현황

※ 자체심의 조직, 인력,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적 물의자, 범법행위자 출연 제한 절차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 기재

□ 자체심의현황('18.1.1.~'20.5.31.)

구분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 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 건수 (비율)	전체 심의 건수		사전 심의 건수 (비율)	당일 심의 건수 (비율)	사후 심의 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방송국명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 (참고사항) 방송평가의 경우 심의 부서의 설치 여부, 심의 제재 사전 지적 비율 등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므로 중복 평가되지 않음

※ 자체심의 규정 : 별도 첨부(첨부서류 00쪽 참조)

4. 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 등 현황

-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
- ※ 전문편성 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항목 삭제

□ 편성규약 제정일자

□ 편성규약 주요 내용

- ※ 편성규약 개정 실적이 있는 경우 개정 사유, 변동 내용 등을 함께 기재

□ 편성규약 공표 방법 및 공표 현황

□ 편성규약 내용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

- 편성위원회 구성 현황
- 편성위원회 개최 실적
- 기타 편성규약 내용 주요 이행실적
- ※ 편성규약 전문 : 별도 첨부(첨부서류 00쪽 참조)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실현 계획(‘21~’25)

□ 기본방향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은 제도적 장치 위주로 평가
 - 프로그램 품질 제고(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노력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선거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편성규약 제정·공표, 개최 실적 등
-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4조(업무)에 따른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 실현계획은 2021. 1. 1. ~ 2025. 12. 31.

□ 주요 추진 계획

3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18~’20)

1. 시청자 권익보호 등 이행실적 현황(‘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 및 이행실적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

-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 제고 실적

2. 시청자 민원 처리 현황(‘18.1.1.~’20.5.31.)

가. 시청자 민원처리 전담 부서 현황

나. 시청자 불만 접수창구 및 접수창구 안내 내역

다. 시청자 민원(불만)처리 절차

- ※ 시청자 불만처리 주체(담당부서 등), 처리절차, 피드백 및 업무 반영 절차 등 상세하게 기술

라.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8년	ex) 253(3)			
2019년				
2020년 1~5월				
합계				

- ※ 방송사 단위로 기재하되(지역국이 있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작성),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UHD 관련 불만처리 사항은 괄호()로 추가 기재
- UHD 관련 실적 없는 경우 표 아래에 “※ UHD 관련 불만처리 내역 없음”으로 기재

마.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

(단위 : 건)

구분	프로그램 불만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시청자 권익보호	서비스 이용	기타	합계
2018년	건수					
	비율(%)					100%
2019년	건수					
	비율(%)					100%
2020년 1~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57쪽)’를 참고하여 시청자불만 건수 및 비율 기재
※ 방송사 단위로 기재하되(지역국이 있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작성),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UHD 관련 불만처리 사항은 괄호()로 추가 기재
- UHD 관련 실적 없는 경우 표 아래에 “※ UHD 관련 불만처리 내역 없음”으로 기재

바.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

(단위 : 건)

구분	프로그램 불만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시청자 권익보호	서비스 이용	기타	합계
2018년	건수					
	비율(%)					100%
2019년	건수					
	비율(%)					100%
2020년 1~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연도별 시청자불만 미처리 건수·비율 기재
※ 방송사 단위로 기재하되(지역국이 있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작성),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UHD 관련 불만처리 사항은 괄호()로 추가 기재
- UHD 관련 실적 없는 경우 표 아래에 “※ UHD 관련 불만 미처리 내역 없음”으로 기재

사. 주요 시청자 민원 및 처리 내역

※ 빈번하게 접수되는 내용의 시청자 민원 처리현황 기재

구분	불만유형	접수건수	민원내용	처리내역
공통 또는 매체명				

참고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 재허가신청서 작성시에는 참고 자료 삭제 필요

□ 지상파·지역민방·종합편성·지상파DMB 사업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
	진행자 불만	진행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
	출연자 불만	출연자에 대한 출연 불만 또는 출연자 발언 등에 대한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료화면의 선정성 폭력성 및 다른 자료화면 사용에 대한 불만
	자막 불만	자막 오기 자막 표현에 대한 불만
	편성불만	프로그램 편성 관련 불만
프로그램 관련 시정 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영상 및 기사 불만
	정정보도 요청	리포트나 제작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민원인의 정정 및 삭제 요청 사항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피해보상 사항
	저작권에 관한 건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등
	명예훼손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명예훼손 사항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다시보기 불만, 이용 장애, 프로그램 소개 업데이트, 시청자 게시판 등
	기술관련 불만	방송 기술 및 난시청(종합편성 제외)
기타	기타	화질불만 등

※ 중·소분류 : 유형의 예시

4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현황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18.1.1.~’20.5.31.)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 단, 전문편성의 경우 유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내용 작성 가능

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기본 방향

나.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등 기재
※ 방송사 자체 운영규정 전문 : 별도 첨부(첨부서류 00쪽 참조)

다.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한 시청자위원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허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라.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ex) 25(1)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방송사 단위로 기재하되(지역국이 있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작성),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UHD 관련 불만처리 사항은 괄호()로 추가 기재
- UHD 관련 제시의견이 없는 경우 표 아래에 “※ UHD 관련 제시의견 없음”으로 기재

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등 반영 내역

순번	제시일자 (반영시기)	제시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비고

바.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청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제안시기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청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

□ 2018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19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20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해당연도 연말 기준으로 작성('20년은 5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및 운영 현황

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

-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단순 참여 및 출연한 방송이 아닌, 방송법 상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작성
 - * 1)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2)'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 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 근거 법령 :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5.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계획(실적)

- o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 의견 공개 청취 관련 고지 계획(제허가대상 방송국, 홈페이지 등)
- ※ 최초 제출시에는 '고지 계획'을 제출하고 시청자 의견청취(8월 중) 이후 보정본에 '고지 실적'으로 갈음하여 수정 제출
- ※ 향후 고지 계획에 따른 고지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추후 공문발송 예정)

6.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홈페이지 등 운영 실적

- ※ '5.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와 별도로, 방송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청자 의견수렴홈페이지 운영현황을 확인하는 항목임. 홈페이지 현황 이미지 파일 등을 활용하여 작성

5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21~'25)

1. 기본방향

-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및 실현 계획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불만처리시스템 등 시청자 참여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 등

2. 세부 추진 계획

6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18~'20)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현황("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 63 -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및 이행실적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기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 64 -

2. 캠페인·행사·기부 등 주요 실적 현황("18.1.1.~'20.5.31.)

가. 개요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 부								
	행 사								
	캠페인								
	후 원								
	기 타								
총계									

* (금액) 회사에서 지출한 지원금을 기재.

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유형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참여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 * '18.1.1.~'20.5.31. 기간 내용 작성
- *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을 년월란에 기재. 지역은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유형은 기부, 행사, 캠페인, 후원, 협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 지원금은 방송사에서 지불한 금액을 기재. 단,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 발생일을 기준으로 리스트 작성. 양이 많은 경우 3쪽 분량만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 할 것(별첨 자료에는 본문에 기재한 자료를 포함하여 리스트 작성)
- * 관련 입증서류 : 별도 첨부(첨부서류 00쪽 참조)

- 65 -

7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21~'25)

1. 기본방향

- ※ 신청 법인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을 다음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등

2. 세부 추진 계획

- 66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 방송 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 67 -

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18~20)

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 현황^(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 2017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편성의 기본방향 내용과 구체적 편성내용(이행결과)을 기재

- 69 -

- 68 -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

※ 2017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기재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 이행실적

□ 세부 내역

① 자체제작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방송국				'00.0~'00.0 / 매주 목, 금	00분(회)
				'00.0.00.	00분
합계					

※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의도 및 개요를 기재(지역방송사가 수증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및 개요를 알 수 없는 경우, '-'로 기재)

※ 프로그램명 유형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분

※ 방송일시는 '특정 방송일자' 또는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기재

- 정규편성 등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요약하여 기재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일자별로 나열하지 않도록 함)

※ 발생일(방송일자) 순으로 3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하되, 전체 내역은 별도 첨부

- 70 -

② 수중계(본사 또는 네트워크사)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방송국				'00.0~'00.0 / 매주 목, 금	00분(회)
				'00.0.00.	00분
	합계				

- ※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의도 및 개요를 기재(지역민방은 수중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및 개요를 알 수 없는 경우, '-'로 기재)
- ※ 프로그램명 유형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분
- ※ 방송일시는 '특정 방송일자' 또는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기재
 - 정규편성 등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요약하여 기재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일자별로 나열하지 않도록 함)
- ※ 발생일(방송일자) 순으로 3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하되, 전체 내역은 별도 첨부

③ 외주제작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방송국				'00.0~'00.0 / 매주 목, 금	00분(회)
				'00.0.00.	00분
	합계				

- ※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의도 및 개요를 기재(지역민방은 수중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및 개요를 알 수 없는 경우, '-'로 기재)
- ※ 프로그램명 유형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분
- ※ 방송일시는 '특정 방송일자' 또는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기재
 - 정규편성 등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요약하여 기재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일자별로 나열하지 않도록 함)
- ※ 발생일(방송일자) 순으로 3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하되, 전체 내역은 별도 첨부

④ 외부구입 및 기타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방송국				'00.0~'00.0 / 매주 목, 금	00분(회)
				'00.0.00.	00분
	합계				

- ※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의도 및 개요를 기재(지역민방은 수중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및 개요를 알 수 없는 경우, '-'로 기재)
- ※ 프로그램명 유형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분
- ※ 방송일시는 '특정 방송일자' 또는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기재
 - 정규편성 등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기간 / 방송요일로 요약하여 기재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일자별로 나열하지 않도록 함)
- ※ 발생일(방송일자) 순으로 3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하되, 전체 내역은 별도 첨부

2. 제작주체별·방송분야별 편성실적

가. 자체편성·자체제작 방송시간

(단위 : 분, %)

방송국명 (매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ABC (DTV)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방송국별 / 매체별 구분하여 작성

나. 제작주체별 프로그램 수급 비율

(단위 : %)

방송국명 (매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00%	00%	00%	00%	00%	00%
	자체제작	00%	00%	00%	00%	00%	00%
	외주 제작	순수 외주	00%	00%	00%	00%	00%
		자회사 외주	00%	00%	00%	00%	00%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00%	00%	00%	00%	00%
		국외	00%	00%	00%	00%	00%
	기타 프로그램	00%	00%	00%	00%	00%	00%
	연간 총 전체방송	100%	100%	100%	100%	100%	100%

-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Relay하는 지역방송국)은 본사 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과 타 항목의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 "계획"란에는 2017년 (재)허가신청서에서 제시된 연간 수급 비율을 기재

다.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단위 : 분, %)

방송국명	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전체 방송	시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주요방송 분야 ()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전체 방송	시간								
		비율								

- ※ "이행률"란에는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기재
- ※ 지역방송국의 경우, 본사 또는 제휴사의 프로그램 Relay 편성된 프로그램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외부구입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교양·오락의 편성시간을 기입
-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라. 지역방송국 자체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

- ※ 자체제작방송이 있는 지역방송국에 한하여 작성
- ① 종합편성

(단위 : 분, %)

방송국명	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전체자체제작방송	시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주된방송분야명()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전체자체제작방송	시간									
		비율									

- ※ “이행률”란에는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기재
- ※ 지역방송국에서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의 분야별 방송비율을 작성
-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3. UHD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 ※ UHD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한하여 작성
- ※ DTV, 라디오 방송사업자 해당 항목 삭제

가. UHD 방송프로그램 비율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전체 방송시간(분)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 ※ UHD 방송프로그램 세부 편성실적(*18.1~*20.5)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 세부 편성실적 양식은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연간 실적 양식 활용하여 첨부

나. 제작주체별 UHD 프로그램 수급 비율

(단위 : %)

방송국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실적	비율	실적	비율	실적	비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전체 UHD 방송							

- ※ 전체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수급원별 방송시간 및 비율 기재

다. UHD 프로그램 분야별 방송비율

(단위 : 분, %)

방송국명	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실적	비율	실적	비율	실적	비율
	보도						
	교양						
	오락						
	전체 UHD 방송						

- ※ 전체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분야별 편성실적 및 비율 기재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21~*25)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허가받은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 매체별 기본방향

- ※ 허가받은 매체의 특성(종합편성, 전문편성) 등을 고려한 방송의 다양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 등을 작성
- ※ UHD의 경우에는 UHD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계획, 제작 전환 계획, 편성전략 등을 상세히 기재

2.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

방송국명 (매체)	방송시기	프로그램명	분야 (유형)	방송시간 (회당)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수급계획을 기재
- ※ 방송시기에는 편성 유형에 따라 00년 상반기, 하반기 혹은 매일 또는 요일(월화, 주말 등)을 적어도 무방
- ※ 분야(유형)란에는 분야(보도, 교양, 오락 등) 구분 및 특징, 정규 등 편성 유형 기재
- ※ 비교란에는 자체제작, 외주, 구입 등 수급 유형, 기타 특이사항 등 명시

3. 제작주체별·방송분야별 편성계획

가. 자체편성·자체제작 방송 계획

(단위 : 분, %)

방송국명 (매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ABC (DTV)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ABC (FM)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 방송시간, 자체제작 방송 시간과 비율을 작성
- ※ 자체제작 시간이 자체편성 시간보다 클 수는 없음(자체편성은 자체제작+외부구입)

나. 제작주체별 프로그램 수급 계획

(단위 : %, %p)

방송국명 (매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00%	±00%p								
	자체제작	00%	±00%p								
	외주 제작	순수 외주	00%	±00%p							
		자회사 외주	00%	±00%p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00%	±00%p							
		국외	00%	±00%p							
	기타 프로그램	00%	±00%p								
	연간 총 전체방송	100%	-	100%	-	100%	-	100%	-	100%	-

-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Relay하는 지역방송국)은 본사 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과 타 항목의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 연간 총 방송시간을 기준(100)으로 수급원별 비율을 기재하고, 증감 항목에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00%p”로 기재(변동 없을시 “-” 기재)
- ※ 2021년 증감 항목의 경우, 2020년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2017년 (재)허가시 제출한 2020년 계획 대비 증감을 기재

다.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단위 : 분, %)

방송국명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전체 방송	시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된방송 분야명()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전체방송	시간				
		비율				

- ※ 지역방송국의 경우, 본사 또는 제휴사의 프로그램 Relay 편성된 프로그램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외부구입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교양·오락의 편성시간을 기입
-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라. 지역방송국 자체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계획

※ 자체제작방송이 있는 지역방송국에 한하여 작성

① 종합편성

(단위 : 분, %)

방송국명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도	시간					
		비율					
	교양	시간					
		비율					
	오락	시간					
		비율					
전체 자체 제작방송	시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된방송 분야()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 분야	시간					
		비율					
	전체 자체 제작방송	시간					
		비율					

※ 지역방송국에서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의 분야별(보도·교양·오락) 방송비율을 작성
※ 방송국의 방송사황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4. UHD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

- ※ UHD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한하여 작성
- ※ DTV, 라디오 방송사업자 해당 항목 삭제
- ※ 현행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19.8월 개정)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삼방송, 리마스터링 UHD 프로그램, 7일 내 초재방, 50% 미만 4K 영상 프로그램 등의 인정비율이 한시적으로 100% 적용됨을 감안하여 작성

가. UHD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방송시간(분)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 ※ UHD 방송프로그램 세부 편성계획('21.1~'25.12)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 세부 편성계획 양식은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연간 실적 양식 활용하여 첨부

나. 제작주체별 UHD 프로그램 수급 계획

(단위 : %, %p)

방송국명 (매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증감	비율	증감
	자체제작	00%	-	00%	±00%p						
	외주 제작	순수 외주	00%	-	00%	±00%p					
		지회사 외주	00%	-	00%	±00%p					
		국내	00%	-	00%	±00%p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외	00%	-	00%	±00%p					
		기타 프로그램	00%	-	00%	±00%p					
	연간 전체 UHD 전체방송	100%	-	100%	-	100%	-	100%	-	100%	-

- ※ 연간 총 UHD 방송시간을 기준(100)으로 수급원별 비율을 기재하고, 증감 항목에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00%p"로 기재(변동 없을시 "-" 기재)
- ※ 2021년 증감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함("-" 기재)

다. UHD 프로그램 분야별 방송 계획

(단위 : 분, %)

방송국명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UHD 방송	시간(분)					
		비율(%)					

라. 주요 UHD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

방송국명	방송시기	프로그램명	분야 (유형)	방송시간 (회당)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UHD 프로그램 수급계획을 기재
- ※ 방송시기에는 편성 유형에 따라 00년 상반기, 하반기 혹은 매일 또는 요일(월화, 주말 등)을 적어도 무방
- ※ 분야(유형)란에는 분야(보도, 교양, 오락 등) 구분 및 특징, 정규 등 편성 유형 기재
- ※ 비고란에는 자체제작, 외주, 구입 등 수급 유형, 기타 특이사항 등 명시

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이행실적('18~'20)

1. 방송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등 주요 실적('18.1.1.~'20.5.31.)

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기본 방향

- ※ 2017년 (제)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에 맞게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재난방송 편성 관련 사항은 제외(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심사)

나. 주요 이행실적

- ※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 공익적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위주로 심사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편성위주로 심사
- ※ 재난방송 편성 관련 사항은 제외(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심사)

2.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18.1.1.~'20.5.31.)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릴레이프로그램 포함한 실적과 제외한 실적(자체편성) 두가지를 구분하여 모두 자료를 작성

가. 개요

(단위 : 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비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방송국 (전체)										
방송국 (자체편성)										
합계										

※ 2020년 계획은 2017년 신청서 상의 수치를 기입하고, 실적은 2020.5.31.일까지 실적 기입
※ 전년대비증감비율은 실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감비율 기재
※ 재난방송 편성 관련 사항은 제외(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심사)

나. 공익적 프로그램 유형

-

※ 2017년 (재)허가시 제출한 공익적 프로그램 유형 등 작성 기준 등을 기재
※ 재난방송 편성 관련 사항은 제외(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심사)

다. 세부 편성 현황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발생일(방송일시)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별첨 자료에는 본문에 작성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작성
※ 유형에는 나. 공익적 프로그램 유형 기재
※ 재난방송 편성 관련 사항은 제외(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심사)
※ 비고 칸에, 자체제작/계열사 교환/외부구매/수중계 등 구분하여 표기

3.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편성 실적

가.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편성 기본 방향

※ 2017년 (재)허가시 제출한 편성 기본 방향 작성

나.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유형

-

※ 2017년 (재)허가시 제출한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유형 등 작성 기준 기재

다.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방송국명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비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어린이	시간			%						%
		비율	%	%		%	%	%	%	%	
	노인	시간			%						%
		비율	%	%		%	%	%	%	%	
	다문화	시간			%						%
		비율	%	%		%	%	%	%	%	

※ 2020년 계획은 2017년 신청서 상의 연간 계획 수치를 기입하고, 실적은 2020.5.31.일까지 실적 기입
※ 2020년도 이행률은 전체 계획 대비 5월말까지의 이행 비율 기재
※ (비율) 전체 방송시간 대비 시간 비율 기재
※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적합성이 높은 유형에 산정하여 기재(중복 산정불가)
- 어린이·노인·다문화 편성실적 각각의 합계가 전체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이나 전체방송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세부 편성 실적

① 어린이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② 노인 관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③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각 항목의 편성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발생일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비고’ 칸에 자체제작/계열사교환/외부구매/수중계 등 구분하여 표기

3.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은 아래 모든 항목 일괄적으로 릴레이프로그램 포함한 계획과 제외한 계획(자체편성)을 두가지를 구분하여 모두 자료를 작성할 것

가. 개요

(단위 : 분, %,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시간	비율	증감	시간	비율	증감	시간	비율	증감
방송국명		00%	±00%p		00%	±00%p		00%	±00%p
합계									

구 분	2024년			2025년			합계
	시간	비율	증감	시간	비율	증감	
방송국명		00%	±00%p		00%	±00%p	
합계							

※ 시간 및 비율은 연간을 기준으로 작성
※ 비율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편성시간 비율 기재
※ 증감은 전년도 계획 대비 증감률을 ±00%p로 기재(2021년의 경우 2017년도 (제)허가시 제출한 2021년도 계획 대비 증감율을 기재)

나. 공익적 프로그램 유형

-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시간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유형 등 작성 기준 등을 기재

4.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방송 편성 계획

가.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편성 기본방향

나.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어린이	시간	분	분	분	분
		비율	%	%	%	%
	노인	시간	분	분	분	분
		비율	%	%	%	%
	다문화	시간	분	분	분	분
		비율	%	%	%	%
	전체 방송시간		분	분	분	분

※ 전체 방송시간 : 연간 해당 방송국의 전체 방송시간

다.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유형

※ 어린이·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의 유형 등 작성 기준 등을 기재

5.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가. 장애인 방송 편성 기본방향

나.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o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단위 : 분, %)

방송국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전체 방송시간										

※ 장애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아님)
※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편성시간 비율 기재

o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계획

※ 라디오방송사는 해당 항목 삭제

(단위 : 분, %)

방송국명	유 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어방송	시간				
		비율				
	자막방송	시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				
		비율				
	전체 방송시간					

5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 이행실적(*18~'20.5)

1.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2.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방송사명 (DTV)			%			%			%
방송사명 (UHD)									
합 계									

※ DTV/UHD/AM/표준FM/FM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DTV와 UHD 제작투자 내역 모두 기재할 것
※ 2020년의 경우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실적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이행률) 계획 대비 실적의 비율 기재
※ 상기 금액은 3. 항목의 연간 총 전체방송 비용 금액과 일치해야 함

3. 제작주체별 프로그램 수급 비용

(단위 : 백만원)

방송국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DTV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자체제작직접비)						
	외주제작	순수 외주					
		지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자체제작비 산정 기준 : 방통위 제시 기준 적용							

- ※ DTV/UHD/AM/표준FM/FM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DTV와 UHD 제작투자 내역 모두 기재할 것
-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연간 총비용은 '2.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실적' 금액과 일치해야 함
- ※ 자체제작 비용 란에는 방통위가 '14.3월 제시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기준"상의 직접제작비'를 기준으로 기입할 것. 다만 외주제작비는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직접제작비를 기입함
- 직접제작비 :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제작진행비 등 자체 · 공동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 · 제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프로그램 기획 · 제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상 간접제작비)은 제외

참고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기준(14.3)

※ 재허가신청서 작성시에는 참고 자료 삭제 필요

□ 개요

- (지역 제작비 투자비용) 방송사업자 전체 매출액* 중 프로그램 직접제작비에 대한 비율
-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자료 기준
- (프로그램 제작비)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하고 자체·공동·외주형태로 제작하여 방송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직접제작비와 간접제작비로 구분
- 단, 방송사가 기획 · 제작하지 않은 타 방송사 등이 제작한 프로그램 구입비, 기타비용*, 판매관리비* 등은 제외
- * 기타비용 :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행사 수익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
- * 판매관리비 :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없는 임직원 및 외부인력의 인건비 등
- ※ 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제작 지원금을 포함
- (직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제작진행비 등 자체 · 공동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 · 제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간접제작비) 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프로그램 기획·제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 제작비 세부분류기준

가. 직접제작비

- ① 원고출연료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연료(전속금 포함), 문예비(작가료) 등 비용
- ② 음향영상재료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송 저장매체(CD, tape 등) · 음반CD · 음원 구입비, 효과료, 녹음녹화비 등 비용
- ③ 미술재료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장비, 소품비, 무대 · 장비 설치운반비, 프로그램CG 등 비용
-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를 소모품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④ 외부장비이용료 :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장비(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를 임차하는 비용
- ※ 외부장비이용료를 임차료에 포함 가능
- ⑤ 외부시설이용료 :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시설(장소, 차량, 터빙 시설, 녹음녹화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 외부시설이용료를 임차료에 포함 가능
- ⑥ 시장비 : 경쟁을 통한 상품 및 상금 등을 지급하는 음악경연프로그램, 퀴즈프로그램 등에서 집행되는 비용
- ⑦ 통신전재료 : 연합뉴스 소재 사용료 등 뉴스 제작을 위한 기본 소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⑧ 중계권료 : 스포츠 등의 실황을 중계할 때 주최자측에 지불하는 비용
- ⑨ 저작권료 : 저작권 관련 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에 지불하는 비용
- ⑩ 외부제작인력 인건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세트제작, 촬영, 편집, 중계, 제작차량 운전 등)의 시간의 수당 등 인건비(단, 임직원 및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외부인력(홍보, 송출, 유지보수, 기술차량 운전 등)의 인건비는 제외)
- ※ 인건비를 제작 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⑪ 외부제작인력 복리후생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세트제작, 촬영, 편집, 중계, 제작차량 운전 등)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단, 임직원 및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외부인력(홍보, 송출, 유지보수, 기술차량 운전 등)의 인건비는 제외)
- ※ 복리후생비를 제작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⑫ 외부제작인력 법정부담금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세트제작, 촬영, 편집, 중계, 제작차량 운전 등)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단, 임직원 및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외부인력(홍보, 송출, 유지보수, 기술차량 운전 등)의 인건비는 제외)
- ※ 법정부담금을 제작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⑬ 기획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회의 및 도서구입비 등에 따른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기획비는 제외)
- ※ 기획비를 도서인쇄비, 조사연구비 또는 회의비에 포함 가능

⑭ **여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여비는 제외)

⑮ **도서인쇄비** : 퀴즈프로그램 문제출제용 도서구입비, 대본 인쇄비 및 쿠키드 제작비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도서인쇄비(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도서인쇄비는 제외)

※ 도서인쇄비를 기획비 또는 조사연구비에 포함 가능

⑯ **조사연구비** : 방송용 여론조사비용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에 투입되는 용역비 또는 물품비 등에 따른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조사연구비는 제외)

※ 조사연구비를 기획비 또는 도서인쇄비에 포함 가능

⑰ **회의비** : 아이템 회의 및 구성계획 회의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회의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회의비는 제외)

※ 회의비를 기획비 또는 조사연구비에 포함 가능

⑱ **제작진행비** : 뉴스제작 관련 취재 진행성 취재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외부인력 용역비, 출연자 섭외비, 야외제작비, 해외제작비 등(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제작진행비는 제외)

※ 제작진행비의 진행비를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㉑ **소모품비**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 또는 드라마 등 방송제작과 연계되는 사무용 문구류와 소모성 잡품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소모품비는 제외)

㉒ **보험료** :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운전자, 방송제작장비, 외부제작 인력, 공연장 안전, 해외취재·제작 출장 등과 관련된 보험료(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차량 및 운전자, 송출장비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㉓ **지급수수료**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 및 진행비*(단,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감사 수수료,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비용, 송신소 안전관리 수수료, 전파사용료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지급수수료는 제외)

*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외부 인력 용역비, 출연자 섭외비, 야외제작비, 해외제작비, 기상정보 제공료, 방송용 여론조사비용, 공연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수수료 및 인지도, 공연장 안전 관련 경호인력 용역비, 공연장 청소인력 용역비 등

㉔ **임차료** : 프로그램 제작관련 외부장비이용료 및 외부시설이용료(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임차료는 제외)

㉕ **회선사용료**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회선사용료(단, 자체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완성품을 송신소, 중계소, 타방송사로 송출하는 비용, 등의 회선사용료는 제외)

* 현장 중계방송, 실시간 현장상황 보도 및 보도기사 송고 등

㉖ **외주제작비** : 방송사가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비용과 타방송사와 공동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단, 외주제작에 소요되는 간접적 성격의 비용은 제외)

나. 간접제작비

① **임직원 인건비** : 임직원(정규직 및 계약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 인건비

㉗ **피복비** : 재난재해 현장 취재를 위한 취재, 촬영기사 방한복, 우의 및 헬멧 구입경비 등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피복비는 제외)

㉘ **수선유지비** :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방송장비 이용에 따른 수선 유지비용(단,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방송장비의 감가상각비,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유지비용 등의 수선유지비는 제외)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방송장비 : 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

※ 제작차량의 수선유지비를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에 포함 가능

㉙ **차량유지비** : 프로그램 제작차량 이용에 따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검사비, 자동차세, 세차비 등 유지비용(단, 프로그램 제작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의 차량유지비는 제외)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차량유지비를 보험료에 포함 가능

㉚ **수도광열비** : 프로그램 제작장소 및 방송장비 운영을 위한 전력료, 발전용유류 등에 따른 비용(단,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운영 등의 수도광열비는 제외)

※ 방송장비 : 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

㉛ **통신비** : 현장 중계방송, 보도기사 송고, 해외제작 시 현장 통화료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이용하는 중계 단말기 사용료(위성, LTE 등),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전화료 및 우편료, 취재용 웹하드 이용료 등에 따른 비용(단, 자체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완성품을 송신소, 중계소, 타방송사로 송출하는 비용 등의 통신비는 제외)

※ 통신비를 회선사용료에 포함 가능

② **임직원 복리후생비** : 임직원(정규직 및 계약직)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③ **임직원 법정부담금** : 임직원(정규직 및 계약직)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장비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

⑤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

⑥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⑦ **직접제작비 항목* 중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기획비·여비·도서인쇄비·조사연구비·회의비·제작진행비·소모품비·피복비·수선유지비·차량유지비·수도광열비·통신비·보험료·지급수수료·임차료·기타(회선사용료)·외주제작비 등

⑧ **기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할당이 어려운 항목**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외부인력(홍보, 송출, 유지보수, 기술차량 운전 등) 용역비, 네트비(프로그램 제공료), 광고선전비(프로그램 홍보 등),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경비비(송중계소 방법비), 잡비, 운반비(프로그램 Tape 운반 등) 등
(참고자료 끝)

6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21~’25)

1.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2.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방송국명											
합 계											

- ※ DTV/UHD/AM/표준FM/FM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UHD 제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DTV와 UHD 제작투자 내역 모두 기재할 것
- ※ 증감을 항목에는 전년도 계획 대비 증감비율 기재(2021년의 경우, 2017년도 재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2020년도 계획 대비 증감비율 기재)
 - 기준연도(N) 투자 금액이 100, 다음 연도(N+1)의 투자 금액이 110인 경우, 증감율에는 110%가 아닌 10%p 기재

3. 제작주체별 프로그램 수급 비용

(단위 : 백만원, %p)

방송국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용	증감율	비용	증감율	비용	증감율	비용	증감율	비용	증감율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자체제작직접비)										
	외주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자체제작비 산정 기준 : 방통위 제시 기준 적용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자체제작직접비)										
	외주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자체제작비 산정 기준 : 방통위 제시 기준 적용										

- ※ DTV/UHD/AM/표준FM/FM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UHD 제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DTV와 UHD 제작투자 내역 모두 기재할 것
- ※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연간 총비용은 '2.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 금액과 일치해야 함
- ※ 자체제작직접비 비용 란에는 방통위가 '14.3월 제시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기준"상의 직접제작비'를 기준으로 기입할 것. 다만 외주제작비는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직접제작비를 기입함
 - 직접제작비 :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제작진행비 등 자체·공동·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제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프로그램 기획·제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상 간접제작비)은 제외
- ※ 증감을 항목에는 전년도 계획 대비 증감비율 기재(2021년의 경우, 2017년도 재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2020년도 계획 대비 증감비율 기재)

7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18~’20.5)

- ※ 지역방송사와 지역국을 보유한 방송사업자에 한정하며, 자체편성을 기준으로 함
- ※ 지역 프로그램의 정의 :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지역 행사, 지역 주요소식(지역 보도 등), 지역민의 생활 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한정
- ※ 지역 방송국의 자체편성이 모두 지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음

1.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18.1.1.~’20.5.31.)

가.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방송국명							
합 계							

- ※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ex, 지역축제, 지역소식 전달 프로그램 등) 내역 기재
- ※ 비율란에는 지역 자체편성 프로그램 총 방송시간 대비 비율이 아닌, 해당 방송국(채널)의 연도별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비율 작성

나. 지역 프로그램 제작·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방송국명							
합 계							

- ※ 안내서 98페이지 표에서 지역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작성
- ※ 비율란에는 지역 자체편성 프로그램 총 제작 투자액 대비 비율이 아닌, 해당 방송국(채널)의 연도별 전체 제작 투자액 대비 비율 작성

다.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세부실적

구 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지역 프로그램 합계				
방송국명					
	방송국별 지역 프로그램 합계				
지역 프로그램 합계					

- ※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ex, 지역축제, 지역소식 전달 프로그램 등) 내역 기재
-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계와 개요의 방송시간 합계는 동일해야 함
- ※ 비고 칸에, 자체제작, 외부구매 등 수급 유형을 구분하여 표기
- ※ 3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하되, 전체 내역은 별도 첨부

8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계획('21~'25)

- ※ 지역방송사와 지역국을 보유한 방송사업자에 한정
- ※ 지역 프로그램의 정의 :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지역 행사, 지역 주요소식(지역 보도 등), 지역민의 생활 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한정
- ※ 지역 방송국 자체편성이 모두 지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음

1.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계획(2021.1.1 ~ 2025.12.31)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추진 계획

다.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단위 : 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방송국명		%		%		%		%		%
합 계										

- ※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ex, 지역축제, 지역소식 전달 프로그램 등) 내역 기재
- ※ 비율란에는 지역 자체편성 프로그램 총 방송시간 대비 비율이 아닌, 해당 방송국(채널)의 연도별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비율 작성

라. 지역 프로그램 제작·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방송국명		-								
		-								
합계		-								

- ※ 안내서 107페이지 표에서 지역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작성
- ※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비율 작성(2021년도는 “-” 표기)

마. 주요 지역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 분	분야 (유형)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방송시기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						

-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지역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기재
- ※ 방송시기에는 편성 유형에 따라 00년 상반기, 하반기 혹은 매일 또는 요일(월화, 주말 등)을 적어도 무방
- ※ 분야(유형)란에는 분야(보도, 교양, 오락 등) 구분 및 특집, 정규 등 편성 유형 기재
- ※ 비고란에는 자체제작, 외주, 구입 등 수급 유형, 기타 특이사항 등 명시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 경영전략 및 관리 이행실적('18~'20)

1.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가. 직급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2019.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원	일반직					계약직					합계
		직급					소계	직급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나.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20.5.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 직	광고 영업 홍보	계약 직	파견 직	기타	합계
		기자	PD	아나 운서	방송 기술	기타 방송	소계							

-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등으로 구분
- ※ 합병사의 경우, 연주소별로 작성
- ※ 지역방송국 조직이 있는 경우, 본사 및 지역국별로 작성

2.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및 이행실적('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다. 내부 조직도(2020.5.31. 기준)

조직도

-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 2018.1.1.~2020.5.31. 기간중 조직개편이 있었던 경우,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및 조직도 개편 전후 비교표 작성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조직운영·효율성 강화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조직운영의 기본방침 및 효율성 강화방안, 인력운용 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방안

○ 인력운용 계획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

-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에 따른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실적

○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적

다. 인력 운영 실적 및 채용 현황

□ 인력 운영 실적

(단위 : 명)

방송사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 계						
	합계						

※ 방송사업자 단위로 인원 운영 실적을 작성(각 연도말 기준, 2020년도는 5월말 기준)
※ 방송사별 특성에 따라 구분은 수정 작성할 수 있으나, 직군, 직종별로 구분하여 표기 필요(사업부서별로 작성하면 안됨)

라. 계약직 및 파견직 운영 현황

□ 계약직, 파견직 운영 방향

□ 계약직, 파견직 운영 직종

□ 계약직, 파견 직종의 정규직 전환 현황 등

□ 신규 채용 실적

(단위 : 명)

방송사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 방송사업자 단위로 신규 채용 실적을 작성(각 연도말 기준, 2020년도는 5월말 기준)
※ 방송사별 특성에 따라 구분은 수정 작성할 수 있으나, 직군, 직종별로 구분하여 표기 필요(사업부서별로 작성하면 안됨)

3. 분야별 투자실적('18.1.1.~'20.5.31.)

가. 직원 교육 관련

□ 직원 교육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계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2020년 계획은 연간 계획 기재, 이행률은 계획 대비 실적 비율 기재

□ 직원 교육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간	교육유형	교육대상(명)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연구개발 투자 관련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8년		이행 률	2019년		이행 률	2020년 1~5월		이행 률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 이행률은 계획 대비 실적 비율 기재
※ 2019년 5월 계획은 전체 계획을 작성하고 비율은 5월말까지의 실적 비율 기재
※ 설명자료집 153쪽의 '방송기술 관련 투자 실적'을 위 내역으로 포함하여 작성 불가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공동연구 (관련기관)	
합 계				

※ 방법은 「자체연구, 공동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공동연구의 경우는 괄호()안에
관련기관을 기재

4.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대비 실적('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이사회 운영 현황 등

□ 이사회 등 현황

※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 주요 부의사항 등 작성

□ 이사회 운영 실적

□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이행실적

※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계획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유·경영 분리방안, 경영진 구성절차 개선,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계획, 경영감
시기구(경영평가단, 사외이사제 등)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이사회 등 내·외부 지적사항 및 주요 조치 실적

5. 2017년 (재)허가시 제출한 자금조달·운영계획 및 이행실적('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2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21~'25)

1. 중장기 경영전략

가. 중장기 경영전략 기본방향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계획 포함

나. 중장기 경영전략 세부 추진 계획

나.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이행실적

※ 2017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적을 기재

2. 조직 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가.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과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나. 인력 운영계획

□ 인력 운영 세부계획

(단위 : 명)

방송사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 계						
합계							

- ※ 방송사업자 단위로 각 연도말 기준 인원 운영 규모 계획 작성
- ※ 방송사별 특성에 따라 구분은 수정 작성할 수 있으나, 직군, 직종별로 구분하여 표기 필요(사업부서별로 작성하면 안됨)

3. 분야별 투자계획

가. 직원 교육 관련

□ 기본방향

- ※ 향후 5년간 직원 교육 투자 관련 기본방향을 기재

□ 연도별 직원 교육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합 계											

- ※ 증감율 란에는 전년대비증감비율 기재
- ※ 2021년도 증감율 항목은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2020년도 계획대비 증감비율 작성

□ 세부 추진 계획

- ※ (예시) 업무분야별/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교육기관/방송사 연계, 교육 강사 역량 강화, 내부 학습조직 활용, 기타 직원 교육 고도화 계획 등 기재

□ 신규 채용 계획(2021~2025)

(단위 : 명)

방송사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 ※ 방송사업자 단위로 각 연도말 기준 연간 신규 채용 계획 작성
- ※ 방송사별 특성에 따라 구분은 수정 작성할 수 있으나, 직군, 직종별로 구분하여 표기 필요(사업부서별로 작성하면 안됨)

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관련

□ 기본방향

- ※ 향후 5년간 연구개발 투자 관련 기본방향을 기재

□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연구개발 총투자											

- ※ 증감율 란에는 전년대비증감비율 기재
- ※ 2021년도 증감율 항목은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2020년도 계획대비 증감비율 작성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 ※ 방법은 「자체연구, 공동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공동연구의 경우는 괄호()안에 관련기관을 기재

4. 향후 제허가 기간 동안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 기본방향

5. 향후 제허가 기간 동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 기본방향

□ 세부 추진 계획

□ 세부 추진 계획

3 재무구조 현황('17~'19)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재무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파일 별도 제출
※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
※ 계획은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액 기재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적자원 (수신료, 기금 등)								
재송신매출액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액								
지상파광고 매출액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액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총 계								

※ 수입금액 실적의 총합은 111쪽 재무구조 요약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재산상황공표집 자료) 기준으로 함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계획은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 기재

나. 공적지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지원, 기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나” ~ “카”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구분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다. 재송신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라.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마. 지상파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바.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사. 방송채널사용사업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아. 협찬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자.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차. 기타방송사업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카. 기타사업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4 향후 재정 운영 계획(’20~’25)

1. 추정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 대조표	자산총계	(00%)	(00%)	(00%)	(00%)	(00%)	(00%)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구 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손익 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 매출액						
	기타사업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 엑셀파일 별도 제출

2.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공적재원 (수신료,기금 등)	(00%)	(00%)	(00%)	(00%)	(00%)	(00%)	
재송신매출액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지상파광고매출액							
지상파DMB광고 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총 계							

5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18~'20)

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18.1.1.~'20.5.31.)

※ UHD는 2017년 실적부터 기재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 151 -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기술 투자 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기술 등 투자 계획

※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 작성

□ 방송기술 등 투자 이행실적

- 152 -

2. 방송기술 관련 투자 현황('18.1.1.~'20.5.31.)

※ UHD는 2017년 실적부터 기재

가.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0년 5월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재허가 대상 매체명1	제작관련 시설								
	송신관련 시설								
	기타 시설								
	합 계								
재허가 대상 매체명2	제작관련 시설								
	송신관련 시설								
	기타 시설								
	합 계								

※ 양식에 맞게 방송사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작성한 후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작성
※ '17년 내역의 경우 UHD 재허가 대상 방송국만 기재

나.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중 주요 세부내역(2018~2020.5)

(단위 : 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 세부내역을 작성
※ UHD 방송국은 '17년 내역부터 기재

- 153 -

3. 난시청 해소관련 실적('18.1.1.~'20.5.31.)

가. 난시청 현황

나. 난시청 관련 투자 및 수신환경 개선 계획

※ (재)허가시 제출한 투자 및 난시청 해소 계획 기재
※ UHD의 경우 허가 조건에 따라 제출한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 기재

다. 난시청 관련 투자 및 수신환경 개선 실적

- 154 -

라. 난시청 관련 주요 민원 현황

□ 연도별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5월	합계
방송국				

□ 지역별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지역1	지역2	지역3	기타
방송국				

※ 사업권역 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표기하고 사업권역 외 민원은 기타에 작성

□ 난시청 민원 유형 및 조치 결과

※ 난시청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 별첨(첨부서류 00쪽)

4. 방송사고 주요 현황 및 방송사고대응 매뉴얼

가. 방송사고 현황

매체	사고일시	사고내용	사고원인	조치사항	비고
DTV	00.00.00. 00:00:00 ~ 00:00:00 (0분0초)				

※ 허가 기간 중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내용, 사고 원인, 조치사항 등을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조치사항에는 기술적 조치, 재발방지 교육, 시청자 고지 등의 사항을 기재
※ 비교란에는 조치사항에 따른 개선 결과(시기), 관련 민원처리 결과 등을 기재 (민원사항이 없었던 경우에도 '민원 발생사항 없음' 기재)

나. 방송사고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 방송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 별첨(첨부서류 00쪽)

5. 국산장비 사용 현황

※ 가급적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UHD 관련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필요
- 내역이 없는 경우 “UHD 관련 국산장비 사용 현황 없음”을 기재

6. 네트워크 등 시스템 보안 강화 현황

7. 방송관련 신규기술 개발 실적

※ 가급적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UHD 관련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필요
- 내역이 없는 경우 “UHD 관련 신규기술 개발 실적 없음”을 기재

6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21~’25)

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

□ 기본 방향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방송기술 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주요계획)을 기술
※ 장비교체, 화질개선, 수신감도 개선, 신기술 개발 등 방송기술 개선 관련 사항을 기재

□ 세부 투자 계획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방송기술 관련 투자 기본방향(주요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스튜디오 교체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2.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재허가 대상 매체명1	제작관련 시설					
	송신관련 시설					
	기타 시설					
	합 계					
재허가 대상 매체명2	제작관련 시설					
	송신관련 시설					
	기타 시설					
	합 계					

※ 양식에 맞게 방송사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작성한 후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작성

3. 방송시설(재허가 대상)에 대한 투자계획 중 주요 세부내역(2021~2025)

(단위 : 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4. 난시청 해소 계획

가. 난시청 관련 투자 및 수신환경 개선 주요 계획

※ 가급적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UHD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필요

나. 난시청 관련 민원 처리 계획

5. 국산장비 사용 계획

※ 가급적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UHD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필요

6. 네트워크 등 시스템 보안 강화 계획

7. 방송관련 신규기술 개발 계획

※ 가급적 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UHD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UHD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필요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이행실적(*18~*20)

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이행실적 현황(*18.1.1.~*20.5.31.)

가. 개요

방송국명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7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 2017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이행실적

※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발전 지원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 외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 ※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실적,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실적, 방송프로그램 수출실적, 외국 공동제작 현황, 방송교류 협약 체결, 중소방송(지역방송, 유료방송, 기타 방송사업자 등)과의 상생 및 협력 실적 등
- ※ 외주제작사, 프리랜서(작가, 스태프), 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상생 실적 포함

2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및 기여 계획(‘21~’25)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 계획

- ※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계획,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중소방송(지역방송, 유료방송, 기타 방송사업자 등)과의 상생 및 협력 계획 등
- ※ 외주제작사, 프리랜서(작가, 스태프), 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상생 계획 포함

3 방송법 및 관계법령 위반 현황(‘18~’20)

- ※ ‘20.05.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허가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행정처분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

1. 방송법 위반 현황(‘20.1.1.~’20.5.31.)

- ※ 방송법 위반 항목은 신청서류 본문에는 ‘20.1.1.~’20.5.31. 기간으로 한정하여 작성하되, (재)허가기간 전체 내역(‘18.1.1~’20.5.31)을 첨부서류로 제출

가. 시정명령(불이행) 현황(‘20.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재허가조건 불이행		
	과징금			시정명령 불이행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후속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등 처분명과 제반내역을 기재
- ※ 비교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나. 심의제재 현황(‘20.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0조제0항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 제재조치명란에는 방송위로부터 받은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명 기재
- ※ 방송위로부터 받은 “권고”, “의견제시”는 포함하지 않음
- ※ 비교란에는 수중계 여부 기입, 불복하여 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 “소송”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

다. 기타 방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20.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내용	비 고
	과태료					

- ※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이외 방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 작성
- ※ 비교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2. 방송법 외 타법 위반 현황(‘18.1.1.~’20.5.31.)

- ※ 방송평가로 감점되지 않는 다음 항목은 ‘18.1.1.~’20.5.31. 기간 모두 작성

가.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위반 현황(‘18.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나. 전파법 위반 현황(‘18.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18.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18.1.1.~'20.5.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행정형벌, 행정처분 모두 포함)
-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타법 위반 현황 기재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4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18~'20)

1.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가. 개요

구분	(재)허가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00년 재허가 조건(공통)		
00년 재허가 조건(TV)		
00년 재허가 조건(라디오)		
00년 신규허가 조건(00방송국)		

나. (재)허가조건

- ①
- ②
- ③
- ④

※ (재)허가조건을 원문 그대로 나열

다. (재)허가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 ①
- ②
- ③
- ④

- ※ 나. (재)허가조건에 나열한 조건순으로 이행실적 작성
- ※ 연도별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자료 등은 별첨
- ※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증빙서류 : 별첨(첨부서류 00쪽)

2.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실적

가. 개요

구분	(재)허가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00년 재허가 권고사항(공통)		
00년 재허가 권고사항(TV)		
00년 재허가 권고사항 (라디오)		
00년 신규허가 권고사항 (00방송국)		

나. (재)허가 권고사항

- ①
- ②
- ③
- ④

※ (재)허가 권고사항을 원문 그대로 나열

다. (재)허가 권고사항에 따른 이행실적

- ①
- ②
- ③
- ④

※ 나. (재)허가 권고사항에 나열한 순으로 이행실적 작성
※ 연도별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자료 등은 별첨
※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증빙서류 : 별첨(첨부서류 00쪽)
※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실적 증빙서류 : 별첨(첨부서류 00쪽)

3. 이행각서(이행약정서) 제출사업자 이행현황

순번	위원회 지적사항	이행각서 제출내용	이행 결과	미이행 사유	비고

※ 2017년도 (재)허가 및 재허가 이후 최다액출자자변경 등으로 제출한 이행각서(이행약정서) 제출 사업자에 한하여 작성(제출사항 없을 경우 제목 옆에 “ :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시)

5 방송광고 판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 중앙 3사만 작성, 미해당 방송사는 해당 항목 삭제

1. 방송광고 판매 지원 실적 현황('18.1.1.~'20.5.31.)

가. 방송광고 판매 지원 기본 방향

나. 지원 대상 방송사 현황

다.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실적

□ 연도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현황('18.1.1.~'20.5.31.)

<2018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or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지원 현황>

지원대상사업자 (단위:백만원)	최소지원 기준		'00년 결합판매 지원현황			비고
	고시비율 (A)	금액 (C=A×B)	지원액 (D)	과부족액 (D-C)	지원비율 (D+C)	
지역 MBC or 지역 민방 (00사)		%			%	
	소계					
	소계					
종교 방송 (0사)						
	소계	%			%	
영어 방송 (0사)		%			%	
	소계	%			%	
기타 (0사)		%			%	
	소계	%			%	
합계 (00개사)		%			%	
※ (B) 2018년 KOBACO(or 미디어크리에이트) 결합판매 지원 기준금액 = 백만원						

<2019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or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지원 현황>

지원대상사업자 (단위:백만원)	최소지원 기준		'00년 결합판매 지원현황			비고
	고시비율 (A)	금액 (C=A×B)	지원액 (D)	과부족액 (D-C)	지원비율 (D+C)	
지역 MBC or 지역 민방 (00사)		%			%	
	소계					
	소계					
종교 방송 (0사)						
	소계	%			%	
영어 방송 (0사)		%			%	
	소계	%			%	
기타 (0사)		%			%	
	소계	%			%	
합계 (00개사)		%			%	
※ (B) 2019년 KOBACO(or 미디어크리에이트) 결합판매 지원 기준금액 = 백만원						

<2020년 1~5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or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지원 현황>

지원대상사업자 (단위:백만원)	최소지원 기준		'00년 결합판매 지원현황			비고
	고시비율 (A)	금액 (C=A×B)	지원액 (D)	과부족액 (D-C)	지원비율 (D+C)	
지역 MBC or 지역 민방 (0사)		%			%	
	소계					
종교 방송 (0사)						
	소계	%			%	
영어 방송 (0사)		%			%	
	소계	%			%	
기타 (0사)		%			%	
	소계	%			%	
합계 (00개사)		%			%	
※ (B) 2020년 KOBACO(or 미디어크리에이트) 결합판매 지원 기준금액 = 백만원						

□ 네트워크 방송사 총광고매출 지원 현황('18.1.1.~'20.5.31.)

o 근거

o 네트워크 지원방안 주요 내용

※ MBC 본사의 경우 코바코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MBC네트워크 지원방안, SBS의 경우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 내용을 기술

o 연도별 광고매출 지원 현황

<2018년>

지역방송사업 (단위:백만원)	지원기준		0000년 지역방송사 지원현황			비고
	지원비율 (A)	금액 (C=A×B)	지원액 (D)	과부족액 (D-C)	지원비율 (D+C)	
방송	0.0000%				00.0%	
지역 방송 소계	00.0000%				00.0%	
※ (B) 0000년 지역방송 지원 기준금액 = 백만원 (MBC본사 or SBS네트워크 전체 광고판매 실적)						

<2019년>

지역방송사업 (단위:백만원)	지원기준		0000년 지역방송사 지원현황			비고
	지원비율 (A)	금액 (C=A×B)	지원액 (D)	과부족액 (D-C)	지원비율 (D+C)	
방송	0.0000%				00.0%	
지역 방송 소계	00.0000%				00.0%	
※ (B) 0000년 지역방송 지원 기준금액 = 백만원 (MBC본사 or SBS네트워크 전체 광고판매 실적)						

<2020년 1~5월>

지역방송사업 (단위:백만원)	지원기준		0000년 지역방송사 지원현황			비고
	지원비율 (A)	금액 (C=A×B)	지원액 (D)	과부족액 (D-C)	지원비율 (D+C)	
방송	0.0000%				00.0%	
지역 방송 소계	00.0000%				00.0%	
※ (B) 0000년 지역방송 지원 기준금액 = 백만원 (MBC본사 or SBS네트워크 전체 광고판매 실적)						

o 네트워크 지원 증빙서류 : 별첨

※ MBC네트워크 지원방안,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 별첨

2. 방송광고 판매 지원 개선 계획('21 ~ '25)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개선 계획을 제시

※ SBS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 합의서 개정 시 논의 결과, 배경 및 개정결과 제시. 합의서 미체결시 협의 결과 및 향후 개정 방향 등 제시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179 -

1 재난방송 운영 실적('18~'20)

1. 재난방송 운영 기본 방향

-
- ※ 재난방송 실시에 대한 방송사 내부 기본 방침 등 기술

2. 재난방송 운영실적('18.1.1.~'20.5.31.)

가. 재난방송 편성 실적

(단위 : 분, %)

방송국명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방송시간(분)		방송시간(분)		방송시간(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전체방송시간						

- ※ 계획은 2017년 (재)허가 당시 공익성 프로그램 항목으로 제출한 계획 작성
- ※ 비율은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작성
-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중 자막스크롤 방송 시간 등도 포함

나.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유형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스크롤, 재난특보 등				수중계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 실적내용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발생일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일반적인 재난방지 활동에 대한 방송실적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 재난 방송실적을 구분해서 모두 기재

- 181 -

- 180 -

다.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채널	①통보건수	②실시건수	③미실시건수	실시율(%) (②/①*100)	비고
DTV					
FM					
표준FM					
AM					

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시 현황

종보문 제목	통보시각	방송시작시간	통보 (속보 도합)	자막 (스크 롤포함)	spot (경제 인동)	프로그램 내빈명	방송행 태	상세입력사항 (시스템내기타처리시)	비고
지진특 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1	-	-	-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본이내
지진조 기장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본이내
지진특 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특보	9시뉴스 지진특보 반영	본이내

- ※ 실적내용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발생일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마.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운영실적

마. 재난방송 교육실적

- 총 건 (증빙자료 첨부)
- 세부 교육 실적 현황

- 182 -

사. 재난방송 모의훈련실적

- 총 진 (증빙자료 첨부)
- 세부 모의훈련 실적 현황

아.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현황

- 재난방송 매뉴얼 개선 실적 및 비치 현황 등(증빙자료 첨부)

※ 재난방송 매뉴얼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3.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실적('18.1.1 ~ '20.5.31)

※ (예시) 재난방송 전담조직 강화, 재난방송 실시결과 사후평가 및 환류, 유관부처 및 타 방송사 협력, 재난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시청자 제보 활용, SNS 연계 등

2 **재난방송 향후 운영 계획('21~'25)**

1. 재난방송 운영 계획('21.1.1.~'25.12.31.)

가. 기본방향

※ 향후 5년간 재난방송 실시에 대한 방송사 내부 기본 방침 등 기술

나. 세부 추진계획

※ 기본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기술
※ 향후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직원 교육 계획, 재난방송 모의훈련, 재난방송 매뉴얼 개선 등 재난방송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 위주

다. 재난방송 편성계획

방송국명 (매체)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난방송시간(분) (비율)					
	전체방송시간(분)					
	재난방송시간(분) (비율)					
	전체방송시간(분)					

※ 다만, 재난 방송은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예방적, 정기적 재난방지 활동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기재

2.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계획('21.1.1 ~ '25.12.31)

가. 기본방향

※ 실제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기술
※ 재난방송 사후평가 및 환류, 재난방송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유관부처 및 타방송사 협력 계획 등(예시)을 통한 재난방송의 질적인 강화 계획 작성

나. 세부 추진계획

※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기술

3 **협찬 운영 현황('18~'20)**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캠페인 협찬	(%)	(%)	(%)
행사협찬	(%)	(%)	(%)
시상품 협찬	(%)	(%)	(%)
협찬수입 총계	(%)	(%)	(%)
전체매출액			

※ 지역방송국별, 매체별로 작성
※ 괄호 내에는 전체 매출액 대비 협찬액 비율 기재

4 방송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분쟁 현황('18~'20)

1. 개요('18.1.1.~'20.5.31.)

2. 주요 내용

□ 재송신료 관련 분쟁 및 소송 현황

제목 (사건번호)	사건 개요	원고	피고	비고

□ 사내 직원 고용·징계·인사 관련 분쟁 및 소송 현황

제목 (사건번호)	사건 개요	원고	피고	비고

□ 저작권 관련 분쟁 및 소송 현황

제목 (사건번호)	사건 개요	원고	피고	비고

- 187 -

□ 기타 분쟁 및 소송 현황

제목 (사건번호)	사건 개요	원고	피고	비고

- ※ 재송신료 관련 분쟁 및 소송, 사내 직원 고용·징계·인사 관련 분쟁 및 소송, 저작권 관련 분쟁 및 소송 등 각종 소송 및 분쟁 현황(경과,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
-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중재 및 정정보도 등 소송 현황 포함
- ※ (작성 범위) '20.5.31. 현재 진행중이거나 '18.1.1.~'20.5.31. 기간중 종결된 분쟁 및 소송 기재
ex) '17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18.1.1.~'20.5.31. 기간 중 종결되었거나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우 작성 필요
- ※ 비교란에는 종국결과 또는 진행상황 기재

- 188 -

5 자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

□ 자회사 및 관계회사, 관계채널 현황('20.5.31.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채널명)	주요사업	지 분 율	거래금액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1~5월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합 계									

- ※ 관계회사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아니라 방송사업자간에 지분을 교차소유하고 있거나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및 채널간의 현황, 거래현황을 모두 기재할 것
- ※ 재허가 신청법인(방송사)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PP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채널명, 해당 채널과 콘텐츠 거래 내역 등을 기재할 것
- ※ 지분율란에는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을 기재
- ※ 비교란에는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공동지배기업 등 기재
- ※ 예1) MBC의 경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모두 작성
예2) 지역MBC의 경우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모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사에 대한 내역은 작성 필요 없음(즉, 신청사업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그 사업자가 방송업종이 아니더라도 작성 필요)

- 189 -

6 특수관계자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현황('20.5.31. 기준)

방송사업자명	특수관계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특수관계내용
재허가신청법 인명			PP	00% 출자 자회사
				00% 출자 모회사

- ※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 다, 라목으로 한정(단, 해당 법인의 임원 제외)
- 당사의 30% 이상 지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또는 개인, 당사가 30% 이상 지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계열회사(지역MBC의 경우 타지역MBC, MBC본사의 자회사 포함) 등 포함 필요
- ※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 및 '유형' 칸을 "-"로 기재
- ※ 특수관계자가 PP인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 칸에 채널명으로 기재
- ※ 특수관계내용 칸은 본인(재허가신청 방송사)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 출자했는지, 출자 받았는지에 따라 "00% 출자 자회사", "00% 출자 모회사"로 구분해서 기재
- 출자내역은 없으나 계열회사인 경우 "계열회사"로 기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5.31. 기준)

방송사업자명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PP		

- ※ 본인(재허가신청 방송사) 기준, 타 방송사업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성
- ※ 사실상 위의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계열회사, 모회사, 비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자(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포함되어야 함

- 190 -

6. 기타 제출사항

- 191 -

- 192 -

1 특수관계자 확인서

<주식회사>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000주식회사의 2020년 12월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용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이 확인서의 내용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어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를 위반할 경우에

- ① 본인(법인)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② 000주식회사의 운용방송국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 기간의 6개월 단축,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법인)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이 확인서 작성일까지 000주식회사의 주식을 4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193 -

본인(법인)과 000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방송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주)	지분율(%)	
본 법인명					본 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총 계					

본인(법인)과 000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31일까지의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20년 6월 일

법인(주주)명 :
대표자명 : (인)

- 첨부 : 1. 주주현황(2020.5.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194 -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ㅇㅇ문화방송주식회사의 2020년 12월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용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이 확인서의 내용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어 방송법제8조(소유제한등)를 위반할 경우에

- ① 본인(법인)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② ㅇㅇ문화방송주식회사의 운용방송국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기간의 6개월 단축,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법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이 확인서 작성일까지 ㅇㅇ문화방송주식회사의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 제8항 단서 및 동법 부칙 제6139호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본인(법인)과 ㅇㅇ문화방송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방송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총 계					

본인(법인)과 ㅇㅇ문화방송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20년 6월 일

법인(주주)명 :
대표자명 : (인)

- 첨부 : 1. 주주현황(2020.5.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 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방송법 부칙 제6139호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첨부1)

☐ 주주현황

(2020.5.31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V. 주간기본편성표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20년 5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VI. 방송국 허가증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허가증 사본(스캔본) 첨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원 본

2020. 6.

로고 (주)○○방송

- 203 -

- 204 -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205 -

- 206 -

목 차

I.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201
II.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05
III.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209
IV. 시설설치계획서	215

I.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1. 재허가 신청 현황

구분	텔레비전		라디오					합계
	UHD	DTV	단파	AM	표준FM	FM	소계	
전체 방송국								
재허가 신청 방송국								

※ 허가받은 방송국의 유형에 따라, 해당란에 숫자를 기재

2. 재허가 신청 방송국 세부 현황

허가 번호	허가일자 (허가 인포일)	방송국 명칭 (방송국 종별)	방송사항 (사업종류)	호출부호	소재지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연주소	송신소	일원	일부		
11-0000-00-0000000	'00.00.00 (‘00.00.00)	00DTV방송국 (DTV)	00 사항 전반 (지상파방송사업)	ABCD -DTV	00시 00구 00로 00타워	00시 00구 00동 산0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Mhz	0.0kW
11-0000-00-0000000	'00.00.00 (‘00.00.00)	00DTV방송국 (FM)	00 사항 전반 (지상파방송사업)	BCDE -FM	(상동)	00시 00구 00동 산0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Mhz	0.0kW

3. 재허가 대상 방송보조국

구분	텔레비전		라디오					합계
	UHD	DTV	단파	AM	표준FM	FM	소계	
전체 방송국								
재허가 대상 방송보조국								

※ 허가받은 방송보조국의 유형에 따라, 해당란에 숫자를 기재

4. 재허가 대상 방송보조국 세부 현황

허가 번호	허가일자 (허가 인포일)	방송보조국 명칭 (방송보조국 종별)	방송국 명칭 (방송국 종별)	방송사항 (사업종류)	소재지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일원	일부		
11-0000-00-0000000	'00.00.00 (‘00.00.00)	00DTV방송보조국 (DTV)	00DTV방송국 (DTV)	00 프로그램 중계 (지상파방송보조사업)	00시 00구 00동 산0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Mhz	0.0kW
11-0000-00-0000000	'00.00.00 (‘00.00.00)	00DTV방송보조국 (FM)	00DTV방송국 (FM)	00 사항 전반 (지상파방송보조사업)	00시 00구 00동 산0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시 00, 00, 00, 00, 00, 00,	00Mhz	0.0kW

Ⅱ.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시설설치계획서
- ※ 추후 기술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선설비의 시설개요서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제허가)									
방송국명					최 초 허 가 일 자				
허가번호					전 파 형 식				
시설자명					송신주파수 (MHz)				
설치 장소	송신소 (좌표)				안테나공급전력 (kW, W) 주:		예비:		
	연주소 (좌표)								
방송구역에 관한사항		방송구역							
경영사항		추가구수		가구	시정취가구수		가구 (%)		
		경영형태			구분	성명	대표자		출자금액
		자본금액	억원		주원 출자자				
			직위	성명					
		임원			다수 의결권자				
		최근 3년간의 사업수지내역 (세부내역별첨)	구분	년	년		년		
			수입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지출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방송운영에 관한사항	방송사항 (부가서비스사항)								
	운용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주변성표 별첨)		방송사항			1주간당 시간비율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공급국명			1주간당 시간			
방송시설에 관한사항	구 분	송신장치	수신장치	송신안테나	수신안테나	안테나설치대			
	형식(구성)								
	제조시령								
	제조연월								
최근 3년간 시설변경에 관한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참고사항				

Ⅲ.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면)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① 송신부	(1)송신방식								
	(2)장치구분								
	(3)정격출력		(4)실효복사전력						
	최대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		(5)전파형식		(6)주파수		(7)주파수범위		
			(8)발전방식		(9)변조방식		(10)최고변조 주파수		
	(11)주파수변환 방식								
	(12)주파수관리역제장치								
	(13)안테나공급전력저하장치								
	총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명칭		(15)개수		(16)비고		
			(17)방식		(18)제거대상 주파수		(19)삽입손실		
	스플리어스발사 제거장치		(20)제조자명		(21)형식 또는 명칭		(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송신장치제원								
② 수신부 (주·예비 장치)	(1)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국부발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중간주파중폭부통과대역폭 (-6dB점)			
	(4)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		(5)제조자명		(6)형식 또는 명칭		(7)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③ 송신 안테나 계 등	안테나	(1)형식 및 구성	(2)편파면	(3)이득(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주복사각도 또는 편향 방향		
	(7) 전기적 틸트					(8) 방향별 틸트			
	급전선	(9)종별	(10)길이(m)	(11)손실(dB)		(12)기타	(13)비고		
(14)전체 손실(dB)									

210mm×297mm[백상지(80g/㎡)]

④ 수신 안테 나계	안테나	(1)형식과구성	(2)편파면	(3)이득 (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지향각
	급전선	(7)종별	(8)길이(m)	(9)손실(dB)	(10)기타		
⑤ 연주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⑥ 조정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⑦ 전원 설비	구분	(1)종류	(2)용량	(3)전압	(4)상수	(5)비고	
	연주소	주					
		예비					
		송신소	주				
송신소	예비						
⑧ 접지 방식	(1)송신기			(2)접지저항			
	(3)안테나			(4)접지저항			
	(5)기타						
⑨ 안테 나설 치대 및 급전 선주	구분	(1)종류	(2)높이	(3)기부 지상고	(4)공용하는 방송국	(5)주수	
	안테나설치대						
	급전선주						
⑩ 부속 설비	의사안테나	(1)종류	(2)용량		(3)개수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자동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포함)	(5)경보 또는 감시항목					
		(6)제어장소					
		(7)제어항목					
㉑기타							
㉒점부도면 및 자료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8)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에 따른 방송구역 산출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기 계 요 령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상" 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과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권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서 제초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4): 다른 방송국 또는 방송보조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을 기재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정차와 예비정차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안테나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안테나(Short Vertical Antenna)를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11. 제③란 (4) 및 (5):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길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안테나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오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중독사·조정중독기·전차중독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혼합중독기·안정중독기·스테레오 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오스킬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안테나설치대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구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⑩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⑩란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⑩란 (2): 국사·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안테나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제⑩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⑩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서 제초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⑩란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복사체의 형상및 크기와 복사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안테나의 허부상향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⑩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IV. 시설설치계획서

○ **시설설치계획서** : 연주소 평면도, 연주소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차의 경우) 등 시설설치계획서

※ 향후 5년간의 시설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위의 구분제목을 그대로 두고 “※ 향후 5년간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설설치 계획 없음”으로 기재

- 227 -

- 228 -

재허가신청서 ③



첨부서류

원 본

2020. 6.

로고 (주)○○방송

- 229 -

- 230 -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0. 법인등기부 등본 0

0. 편성규약 전문 0

0. 자체심의 규정0

0.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0

0. 재무상태표0

0. 손익계산서0

0. 방송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0

0. 방송법 위반 현황(2018.1.1.~2020.5.31.)0

0. 재난방송 매뉴얼0

별도 제출 자료

1. 2017년·2018년·2019년 감사보고서 2부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결격사유 확인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0.4.1일 이후 발행자료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함
※ 제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당사자 각각의 자료 모두 제출 필요

4.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 파일

5.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 파일

6. 공사설계서 첨부서류 중 방송국별 방사패턴값 엑셀 파일

7. 제허가 신청서 의견청취용 요약문(최초 접수시 제출)

8. 제허가 신청서 심사용 요약문(최종 보정본 접수 시 제출)

※ 추후 양식 별도 안내

- 235 -

- 236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

본인은 방송법 제13조제3항의 결격사유인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당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0. 6. .

성명 (서명)

- 237 -

편성책임자 결격사유 확인서

본인은 방송법 제13조제3항의 결격사유인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당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0. 6. .

성명 (서명)

- 238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신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2020. 6.

※ 방송사업자간 작성 내용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항목, 세부양식 등은 접수 이후 변경될 수 있음

로고 (주)○○방송

- 239 -

1 방송사업자 일반 현황

□

○

-

.

※ 방송사업자 개요, 비전, 연혁,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등 2페이지 이내로 기재

- 240 -

2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구분	텔레비전		라디오					합계
	UHD	DTV	단파	AM	표준FM	FM	소계	
전체 방송국								
재허가 신청 방송국								

□ 재허가 신청 방송국 세부 현황

방송국명	매체구분	방송사항	주요 방송구역	호출부호	주파수

※ 방송사항은 허가증상 방송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고(ex)방송광고금지 데이터방송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방송채널 개요 및 특성을 간략히 기재

※ 여러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체를 묶어서 작성하고 주파수 등 개별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방송구역, 호출부호, 주파수)은 (서울) 000Mhz, (부산) 000Mhz 식으로 작성

- 241 -

3 방송국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실적	
	계획	
2. 방송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실적	
	계획	
3.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정성 확보	실적	
	계획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실적	
	계획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실적	
	계획	
6.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실적	
	계획	

※ 항목별 각 1페이지 내외, 총 7페이지 이내로 작성

- 242 -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대상 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	한국방송공사	KBS 제1DTV방송국
2	한국방송공사	KBS 제2DTV방송국
3	한국방송공사	KBS 제1AM방송국
4	한국방송공사	KBS 제2AM방송국
5	한국방송공사	KBS 제1표준FM방송국
6	한국방송공사	KBS 제2표준FM방송국
7	한국방송공사	KBS 제1FM방송국
8	한국방송공사	KBS 제2FM방송국
9	한국방송공사	KBS 경인제1DTV방송국
10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11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12	한국방송공사	KBS 사랑의소리AM방송국
13	한국방송공사	KBS (김제)국제방송
14	한국방송공사	KBS 국군FM방송국
15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DTV방송국
16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DTV방송국
17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AM방송국
18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표준FM방송국
19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표준FM방송국
20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FM방송국
21	한국방송공사	KBS 제1부산 UHDTV방송국
22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DTV방송국
23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DTV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24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표준FM방송국
25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표준FM방송국
26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FM방송국
27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DTV방송국
28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DTV방송국
29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AM방송국
30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AM방송국
31	한국방송공사	KBS 제1대구 UHDTV방송국
32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표준FM방송국
33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표준FM방송국
34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FM방송국
35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DTV방송국
36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DTV방송국
37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AM방송국
38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표준FM방송국
39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표준FM방송국
40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FM방송국
41	한국방송공사	KBS 제1광주 UHDTV방송국
42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DTV방송국
43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DTV방송국
44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AM방송국
45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표준FM방송국
46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표준FM방송국
47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FM방송국
48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DTV방송국
49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DTV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50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AM방송국
51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표준FM방송국
52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표준FM방송국
53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FM방송국
54	한국방송공사	KBS 제1대전 UHDTV방송국
55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DTV방송국
56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DTV방송국
57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AM방송국
58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표준FM방송국
59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표준FM방송국
60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FM방송국
61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DTV방송국
62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DTV방송국
63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AM방송국
64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표준FM방송국
65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표준FM방송국
66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FM방송국
67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DTV방송국
68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DTV방송국
69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AM방송국
70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표준FM방송국
71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표준FM방송국
72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FM방송국
73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DTV방송국
74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2DTV방송국
75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AM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76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표준FM방송국
77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FM방송국
78	한국방송공사	KBS 제1울산 UHDTV방송국
79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DTV방송국
80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AM방송국
81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표준FM방송국
82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FM방송국
83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DTV방송국
84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1AM방송국
85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표준FM방송국
86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DTV방송국
87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1AM방송국
88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표준FM방송국
89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제1표준FM방송국
90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DTV방송국
91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AM방송국
92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표준FM방송국
93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FM방송국
94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DTV방송국
95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AM방송국
96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표준FM방송국
97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제1DTV방송국
98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제1라디오FM방송국
99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FM방송국
100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DTV방송국
101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2DTV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02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AM방송국
103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표준FM방송국
104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FM방송국
105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DTV방송국
106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AM방송국
107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표준FM방송국
108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FM방송국
109	한국방송공사	KBS 제3표준FM방송국
110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111	한국방송공사	KBS 지상파DMB방송국
112	(주)문화방송	MBC DTV 방송국
113	(주)문화방송	MBC AM방송국
114	(주)문화방송	MBC 표준FM방송국
115	(주)문화방송	MBC FM방송국
116	(주)문화방송	한국문화지상파DMB방송국
117	(주)에스비에스	SBS DTV방송국
118	(주)에스비에스	SBS AM방송국
119	(주)에스비에스	SBS표준FM방송국
120	(주)에스비에스	SBS FM방송국
121	(주)에스비에스	SBS 지상파DMB방송국
122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DTV방송국
123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AM방송국
124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표준FM방송국
125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FM방송국
126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UHDTV방송국
127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DTV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28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AM방송국
129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표준FM방송국
130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FM방송국
131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DTV방송국
132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AM방송국
133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표준FM방송국
134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FM방송국
135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DTV방송국
136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AM방송국
137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표준FM 방송국
138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FM방송국
139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UHDTV방송국
140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 UHDTV방송국
141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 UHDTV방송국
142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 UHDTV방송국
143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UHDTV방송국
144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UHDTV방송국
145	(주)대전방송	TJB DTV방송국
146	(주)대전방송	TJB FM방송국
147	(주)대전방송	TJB UHDTV방송국
148	(주)케이엔엔	KNN DTV방송국
149	(주)케이엔엔	KNN FM방송국
150	(주)케이엔엔	KNN 제2FM방송국
151	(주)케이엔엔	KNN UHDTV방송국
152	(주)케이엔엔	KNN DMB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53	(주)티비씨	TBC UHDTV방송국
154	(주)지원	G1 UHDTV방송국
155	(주)울산방송	UBC UHDTV방송국
156	(주)광주방송	KBC UHDTV방송국
157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DTV방송국
158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FM방송국
159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	교통FM방송국
160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	영어FM방송국
161	(주)와이티엔디엠비	YTNDMB 지상파DMB방송국
162	한국디엠비(주)	한국DMB 지상파DMB방송국
163	유원미디어(주)	유원미디어 지상파DMB방송국